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- 107호

『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6월 8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(안 제5조)

나.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

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
다.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7조)

라.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thisman77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도서관과 「도서관법」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도서관을 말한다.
2. “도서관자료”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, 필사 자료, 시청각 자료, 마이크로형태 자료, 전자 자료와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제공·열람·대출
2. 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
3.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
4.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5. 지역의 공공도서관,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
6.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

7.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책무)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운 정보이용 및 적극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조(종합발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
2.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군·구 단위 실태조사 계획
4.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인천광역시의 공공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예산의 지원)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비비
2.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
3.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
4.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사업비

② 보조금의 교부는 「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의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자 및 종사자교육)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민간 후원활동의 장려)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실태조사) 군수·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장을 거쳐 인천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평가 및 포상)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작은도서관 진흥법 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- 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) - 제6조(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) ☐ 도서관법 - 제2조(정의) 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[작은도서관 진흥법]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·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)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,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

【도서관법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"공공도서관"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·문화활동·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"공립 공공도서관"이라 한다) 또는 법인(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)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단체 및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"사립 공공도서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.

가.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
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임.

4. 작성자

- 문화복지위원회 강 병 수 의원